

제418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19일(목)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8)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6)
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8)

상정된 안건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3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3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4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4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4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4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8) 9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8) 9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6)	9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1)	9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3)	9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6)	9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22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22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22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22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22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8)	36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6)	36
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8)	36

(15시23분 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일에 열렸던 1차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했던 안건하고 심사 후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법안심사를 위해서 신영숙 여가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들께서 답변하실 경우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속, 직위, 성명 밝혀 주시면 회의록 작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15시24분)

○**소위원장 김한규** 의사일정 자료를 보시면 1항부터 8항까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 부분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수석전문위원께서 그사이에 위원님이나 정부 부처하고 더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소득요건 말고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정부 측에서 지난번 소득요건 관련해서 정부 내의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정 당국하고 이견을 좁히고자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검토의견은 일단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타 한부모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소득요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을 100%로 일단 실시한 후에 단계적인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것은 기재부 의견이고, 여가부 의견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래서 저희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좁혀 보고자 했으나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려워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부처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전 안대로 소득요건 중위 100%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은 들었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되는데요. 양해해주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하고 계신데 혹시 기준 중위소득을 100%가 아니라 150%, 200% 또는 소득기준 없이 전부 다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원이라든지 예산소요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부가 의견을 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에 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설마 기준 중위소득 100%, 이 단일안을 가지고 협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의원입법만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논의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검토하신 자료가?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중위 100% 이하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1만 8000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청의 가구 추계 이런 부분을 보고……

○소위원회 위원장 김한규 좋습니다. 그건 좋고, 처음부터 왜 100%만 기준으로 판단하셨어요? 정부안이 아니잖아요. 의원입법 안인데 의원입법들은 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안마다 기준을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 없이 전부 다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원님들 안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 대상 인원하고 금액도 검토를 하셨을 테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중위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수를 활용을 했는데 사회보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저소득 지원을 하는 기준이 한 63%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시적 양육비 이전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 가구의 수가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중위 100% 이하 가구 비율을 조사를 해 봤는데……

○여성가족부기록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 최성지입니다.

저희가 추계를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장래의 가구 추계하고 한부모 실태조사를 가지고 실제로……

○소위원회 위원장 김한규 아니요,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어떻게 추계했는지가 아니라 지금 의원들 법안이 총 8개인데 그중에 기준 중위소득 100%로 되어 있는 안은 김미애 의원안이잖아요. 왜 김미애 의원안만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했느냐는 거예요. 나머지 의원안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의원들의 안에 대해서도 소요되는 예산과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의원 8개 법안 중에 단 하나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왜 다른 의원안에 대한 검토 자료는 없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기록정책관 최성지 위원장님, 저희가 법에 100%라고 담은 건 아니고요.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위원회 위원장 김한규 정부는 법안 낸 적이 없어요. 김미애 의원안이 정부안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기록정책관 최성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처음에 접근할 때 시범사업으로 어디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논의할 때 사실 100%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소득기준 100%까지 예정한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김한규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협의를 하라고 했고 제가 다른 의원들 안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고도 물어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자료는 없었고 구두로 간단히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거고.

지금 양육비 말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법률에 보면 이런 사회보장급여들이 100%만이 아니고 여러 기준을 대상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보면 통상적으로 중위소득기준 100%가 아니라 중위소득기준 50에서 150 사이를 보통 중위소득계층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소득 기준으로 어디를 끊을 때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고 얼마의 인원이 대상이 되는지 이런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유사한 급여성 지급기준을 저희가 정리한 표는 있는데요 예산까지는 저희가 추계하지는……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게 아니라……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드릴 수 있는 자료 준비는 못 했습니다. 시간 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 안이 일부는 100%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는 소득기준 없이 전부 다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약간 중간 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 안이 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려면 대상이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그리고 시행시기도 저희가 부칙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이렇게 조정하면 예산이 얼마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가부가 너무 단일안에 대한 자료만 갖고 오면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

다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저 자료가 오면 그 쟁점 딱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이 사회적 이슈가 있고 여야가 관심이 많아서 그 법안을 먼저 논의하고 필요하면 쟁점이 적은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까지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양육비 선지급 관련해서 여가부가 자료 준비하면 그것 가지고 논의하시면 어떨까요?

○**서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장 김한규** 먼저 말씀하십시오.

○**서법수 위원** 양육비 대지급에 대해서 전체 다 주더라도 보편 복지가 아니다. 왜냐? 환수를 하기 때문에 보편 복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보편 복지라고 생각해서 좀 깔끄러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채권확보율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추계 자체가 저희도 지금 실시를 하면서 자신 있게 정확한 수치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서법수 위원** 그러면 자신도 없는 걸 뭐 하러 들고 나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제도를 시행해 보고 이 제도 시행에 따라서 작동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서법수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자면,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위소득 100%는 한 75%에 해당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서법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한규 위원님이 중위소득 150%로 하면 몇 %가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얼마가 더 드느냐, 아니면 200%면 몇 %에 해당하고 얼마가 드느냐, 이런 통계 정도는 갖고 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대안을 선택을 해 보자.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주는 것은 기재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중위소득 100%만 고집할 게 아니고 만약 중위소득 150%를 준다고 했을 때는 전체의 한 80%나 85% 내지는 예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200%면 얼마나, 어느 정도 그렇게 추려 와서 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맞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예, 굳이 그걸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오늘 어느 정도라도 대략적인 자료라도 있으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여가부 실무자분들이 다른 법안 논의할 때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0%를 못 하는 이유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저희가 소요예산에 대해서 채권확보율을 21% 정도로 가정해서 이 1만 8000.....

○김남희 위원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자료 다 있고요.

그래서 전체 다 줄 때랑 중위소득 100% 줄 때랑 예산 차이 최대한 해도 140억밖에 안 된다 했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게 안 되냐? 우리가 다른 예산이라도 깎아 주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예산 문제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산 문제 아니면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지난번 회의 때 여야 할 것 없이 이것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사실 다 회수하기 위해서 제도 설계된 거고 한부모가족 필요한 건데 이것 100% 줘야 된다라고 일치돼서 얘기했는데 부작용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무슨 부작용이 있는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지금 한부모가족 관련돼서 다른 지원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기준소득을 뒤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지원이 아니잖아요. 선지급이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선지급이라도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를 하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회수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동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확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고요, 만약?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만약에 이것을 다 선지급으로 하고 나서 회수장치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하면.....

○김남희 위원 그건 여가부가 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잘하면 되겠지만 그 잘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고 사실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제도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중위소득 75%에서 100%로 고작 25% 올리면서 이게 대통령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비판을 받을지 아시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양육비이행법이 201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에서도 10년 동안 선지급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았던,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감안을 해 주시면 저희의 고민을 이해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공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도입할 차례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김남희 위원** 그런데 도입한다고 하면서 75%에서 100%로 고작 25%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걸 가지고 도입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위원님,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는 지원하면 최대 1년이었지만 이것은 사실 18세까지 지원하는 거고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입을 하고자 한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빌의 되고 계속 논의됐지만 못 한 것은 과연 고소득층까지 지원하는 데 국민들이 공감할 것인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나, 전담 조직이 없지 않나, 국가재정 부담, 이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재정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정도 지금 추계를 정확히 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에 제가 144억이 든다고 말씀드린 것은 채권확보율이 21%에 멈춰 있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준다라고 하면 채권확보율이 40%, 50%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재정이 지금보다 2배, 3배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조직 문제인데 양육비이행원이 그동안은 한가원의 산하 기관으로 있다가 9월 27일 독립을 합니다. 독립해서 여기서 인력과 충분한 예산이……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면 중위소득 100%로 하나 전체로 하나 가구 차이가 5000가구밖에 차이 안 난다고 하셨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그게 채권확보율이 아마 고정돼 있다는 전제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을 것 같고 실제로 채권 확보 가구가 50%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양육비 채권이 고정돼 있다는 전제인데 이것을 자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앞으로 만약에 모든 경우에 다 선지급을 한다면 다 채권 확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건데 저희가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내용 자체를 위원님들이 모르는 건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다 논의를 한 거니까.

결국은 100%를 하든 전원 지급을 하든 약간 결단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래도 기왕이면 협의를 해서 합의안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런 논의 하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마련해 봐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도 추계가 많이 들어가고 가정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시면 저희가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것을 오늘 꼭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이 법안 가지고 계속 시간을 미루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가부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지금 딥페이크 관련된 2개의 법안이 있으니까 거기로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이나 지원 대상이 정부의 설계대로 가서 미약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양육비를 받는 거하고 성인이 될 때 까지 고정적인 액수를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한부모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모든 여야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에 비해서 여가부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가 그렇게 주장은 하더라도 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다면 그 중간 지점이 될까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8)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68)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76)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01)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93)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36)

(15시41분)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번에 법안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정부 측 의견은 상세하게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정부 측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명시한 이인선 의원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이 부분에서 신중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여가부 의견은 수정 수용을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동법 7조의3에 따라 국가는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는 ‘삭제지원’으로 자구 수정을 요청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일상회복 지원’으로 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수정 수용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3조 1항 8호를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으로 자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1페이지 맨 왼쪽 위에 보면 이인선 의원안이 ‘경제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가부는 이것을 ‘일상회복 지원’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촬영물의 삭제’를 ‘삭제지원’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재부나 방심위 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기재부는 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 현금 성 지원으로 읽힐 수 있으니까 ‘일상회복 지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방심위는 국가적 책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명시할 경우에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시정 요구 등은 방심위 업무로 규정돼 있어서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방심위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니고 저희의 고유 권한으로서 삭제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무 사항에는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여가부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원안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여가부 수정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가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5페이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 포함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안입니다. 이해식·전진숙·서지영·이인선·김남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먼저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촬영물 등 삭제 지원은 방통위, 경찰청 등 다수 부처가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수정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의 범위에는 이인선 의원님 안과 같이 하고 김남희 의원님 안처럼 제7조의3제1항뿐 아니라 제2항부터 제5항에도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수정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구상권 행사에 관련된 범죄경력 자료 및 인적사항 요청 대상 관련해서는 아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를 추가하고 자료의 범위와 요청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수정 수용 입장입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전문위원 얘기를 오늘 안 듣고 부처 얘기부터 듣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요. 하나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부분만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 의견을 듣겠는데요. 이게 이해식·서지영 의원안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동의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수용합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다음으로는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 의견이 동의던가요?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것까지는 동의하는 건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신가요?

○ 서법수 위원 그 위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주체인 국가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 아까 수정 수용한다던데 어떤 식으로 수정 수용한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국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안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여가부장관으로 하지 않고 국가로 그대로 수정 수용……

○ 서법수 위원 그냥 국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해 주시는 게 합리적인……

○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전진숙 의원안 중에 앞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수정 동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추가하는 것은 그 위의 이해식·서지영 의원안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진숙 의원안 중에서도 그 부분은 오케이다, 그래서 수정의견이라는 얘기군요.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 서법수 위원 국가 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이 되나요?

○ 소위원장 김한규 안 들어가요.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국가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겁니다.

○ 서법수 위원 그런데 위에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한다고 돼 있고, 그렇지요? 추가한다면서요?

○ 김남희 위원 예, 그건 추가한다고……

○ 서법수 위원 추가한다고 그랬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주체인 국가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국가로 그대로 놔두겠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서법수 위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그 부분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피해자 신상정보도 아까 이견이 없으셨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마련 이것은 5페이지 왼쪽에 전진숙 의원안 보시면 법안 내용 때문에…… 개정안 제목 안에 보시면 중간쯤에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의 위탁 근거를 명시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동의하시는 거지요? 전부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수정 수용으로 해서……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한데 그러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를 추가하는 부분 수석전문위원 의견 내신 것 있거든요. 그거랑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문건, 두 가지로 그렇게 수정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수석전문위원님, 7페이지 맨 마지막에 ‘다만’ 그 부분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다만 범죄경력 자료 및 인적사항 요청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를 추가하고 범죄경력 자료는 범죄경력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도록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와 요청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에 그게 반영돼서 뒤에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구상권 관련 조항은 19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 부분은 비용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구상권이니까. 그러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현재는 제5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만 있고 구체적으로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진숙 의원안이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범죄경력 자료하고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거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빠져 있어서 그걸 추가하고, 범죄경력 조회는 대통령령에서 필요한 부분만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전진숙 의원안은 성폭력 행위자만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 그러니까 성폭력 행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넓혀서 여기에 대한 정보는 요구할 수 있게 하자, 어떻게 보면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네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지금 3항이랑 4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같아……

○소위원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는.

○**김남근 위원** 그런데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은 대부분 법률규정 형식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거나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은 계약이나 법률행위의 효과가 기속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데, 이상하게 여가부 관련 법률에는 자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들은 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이건 이번은 넘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법률 형식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을 하면 그건 명확하게 여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기초인지 광역인지 이것도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광역이면 시·도지사로 하거나 기초까지 포함하면 시·도지사 및 시·군·구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만 법률규정이 이렇게 주체가 약간 느슨하게 돼 있어서 이게 왜 그런 건지가 이해는 잘 안 가는데 향후에 있어서는 좀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가부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저는 법률은 모르는데 그게 여러 가지 장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가부장관으로 한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김남근 위원** 그래서 여성인권진흥원이 해외에 나가 가지고 해외에 있는 서버나 이런 데들에 대한 삭제 요청 같은 걸 협의할 때 ‘한국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그런 권한이 있나, 법에는 그냥 국가로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자체가 외국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거야.

행정법이라는 게 다 보게 되면 국가의 여러 행위들을 각 행정 주체로 나눠 가지고 행정 주체를 명확히 해서 하는데 한국의 법에는 그냥 국가로만 돼 있지 이게 어디에서 한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이 하고 그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임하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법률은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만 왜 그렇게 법률규정 형식이 명확하지 않고 느슨하게 돼 있는지……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누가 이 행정행위나 행정 책임을 할 수 있는 주체인지가 불분명하잖아요. 국가가 한다고 그러는 법이 어딨어, 국가의 어떤 행정기관이 한다라고 돼 있지. 그렇게 해야지 명확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건 이후에 법률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제 기억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기관이 외국 단체에 접촉했을 때 실제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이 규정이 아니더라도 그 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으면 되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게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김남근 위원님 말씀이 실제로 업무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지금 서지영·이인선 의원님 안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하는 그 규정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앞으로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이 법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규정을 집어넣은 건데 법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게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사실은 이 규정은 그대로 통과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다음 법안부터는 저도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근 위원님,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지요.

○**김남근 위원** 예.

○**김남희 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다 방심위 쪽으로 넘기고 방심위 통해서 삭제지원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여가부가 사실 여기에 제대로 역할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

○**김남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식이 정확히 되려면 여가부가 삭제 요청을 하면 그걸 방심위가 받아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돼야지 법률 형식적으로는 정확한 거잖아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그런 건데……

○**김남희 위원** 근데 지금 책임 소재가 방심위에 있다고……

○**김남근 위원** 그렇게 하면 여가부는 여기서 뭐 하는 데인가, 법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고 그러면 여가부가 하는 건 없잖아요. 여가부라는 행정기관이 책임을 갖고 하는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삭제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삭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거나 그쪽 부분은 방심위나 방통위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부처 간에 역할이 구분돼 있다, 여가부가 하는 일이 일견 미흡해 보일 수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분리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인권진흥원이라는 곳이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차관님, 지금 저희 법조인 위원님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데 차관님이 말하시는 게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나중에 다음 법안 논의할 때 더 하고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법 규정 체계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은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및 업무에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수정 수용 의견 주셨고요. 여가부도 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으로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몇 개가 있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지금 지역 특화상담소가 1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 디스센터와 비슷한 지역 디스센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삭제지원까지 다 해 주는 곳이 네 곳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담만 해 주는 거고 삭제를 해 주는 건 지금 네 군데만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그렇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기는 어디에서 설치·운영하는 거예요?

주체가 어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지자체가 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일부는 국비가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서울하고 경기 두 군데는 지자체 자비로만 하고 나머지 국비가 지원되는 두 곳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이것도 주체를 법에 넣는 게 더 명확한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그래서 이번에 지역 디성센터가 이 법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피해자 지원기관 지원체계를 개편해야 됩니다. 이 법 구문에 맞춰서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서 디지털성범죄중앙센터에서 긴급한 서비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4개소에서는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특화상담소에서는 근접권, 접근성이 가까운 밀착 서비스를 하는 걸로 지역 체계가 개편이 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서울 경기 부산 인천이 아닌 지역의 피해자들의 삭제지원은 어디다 요청해야 돼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저희 인권진흥원 디성센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안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저희가 지금 디성센터에서 안내를 할 때 지역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 있고 지금 그걸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보통 1366으로 전화를 하게 되면……

○소위원장 김한규 제 질문은 충청도에 있는 분들은 어디다 전화해야 돼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그냥 1366이나 아니면 저희 디성센터로 전화를 하면……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1366에 전화하면 그 업무는 누가 처리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그러면 디성센터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지역 센터 어디로 연결이 돼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중앙 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다 처리한다는 건가요, 지역 네 군데를 제외하고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중앙으로 일원화돼서……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앞으로 시·도지사로 명확하게 설치 주체를 하더라도 이것은 '둘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여전히 지역에 두지는 않겠네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그런데 지자체에서 혹시 시·도지사가 희망하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확대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뭔가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거네요. 기존에 조례로 하던 것을 법에 근거를 둘 뿐이지 이 법을 통해서 지역마다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생기게 하는 건 아니네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지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가, 중앙에 디성센터가 마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외 공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법에 근거한 기관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은……

○소위원장 김한규 그것은 장점인데……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그동안에는 조례로 돼 있었던 건데 법에 명시가 되게 되면 보조금 같은 것을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요. 좋은 법안이고 여기에 ‘시·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아예 명확히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지역도 없는데 문제 제기 좀 하세요. 지역디지털성범죄, 우리 지역도 없지만 위원님 지역도 없는데 이게 지방에 있는 분들은 항상 이런 문제인데 기왕이면 뭔가 광역 단위로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충청하고 호남지역은 전혀 없잖아요, 경북 지역에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최소한 광역 단위 정도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근거만 법으로 올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과연 이 피해자지원센터가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할 때 저희 국회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뭐 달라지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말씀하신 부분이 일견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근거가 명확히 되고 잘 운영하실 수 있게 그러한 근거 규정은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부족하다는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근거 조항에서 또 다른 논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김상욱 위원 궁금한 게 각 지자체에서 시도에 없는 데가 많잖아요.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 시비 100% 들여 가지고 인력하고……

○김상욱 위원 예산 때문인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인력하고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든 업무를 위탁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비와 도비로 다 운영을 하고 또 여기 인력 예산이 13명, 15명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여의치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확대가 되리라 기대는 합니다.

○백승아 위원 근데 디지털성범죄가 앞으로, 기존에도 꾸준히 있었고 n번방 사건도 있었고 또 딥페이크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국에 지역센터가 생기는…… 이왕 법안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냥 의무조항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에 만든다’ 이렇게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규모나 예산은 그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러면 또 이게 시도의 의견을 받아야…… 이 부분은 관계 조항이 없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남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법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고 예산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백승아 위원 앞으로도 또 터질 수 있는 일이고……

○김남근 위원 그건 한번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물론 ‘둬야 된다’ 하면 제일 좋은데 항상 정부 부처가 기재부 설득이 불가능하니까, 기재부가 절대 동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만 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 일은 디성센터가 되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되게 불편해요.

예를 들자면 여가부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선언적 규정이든지 뭔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가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시·도지사를 설득해서 추가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없어요. 지금은 보면 ‘우리는 중앙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머지 지역 것 챙기면 되지’ 하고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피해자 단체들 만나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부산도 인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실제로 상담하고 삭제하고 부서가 달리 돼 있어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자체마다 독자적인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을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인천 쪽 피해자들은 괜찮은데 나머지 쪽 피해자들은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지금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을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걸 해야 되냐, 저희가 법을 바꾸기 전에 여가부 입장에서 뭔가 이걸 개정할 만한 부분은 없을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의원들이 낸 안을 문구 바꾸고 이런 것 말고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일단은 지금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삭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중앙 디성센터 쪽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 특화상담소에서 밀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통해서 운영을 하되 지역 수요를 반영해서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나중에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그러니까 계속 좀 답답한 게 지금 디지털범죄에 대한 삭제지원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전문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고 또 인터넷상으로 퍼진 것을 삭제해 가는 거니까, 삭제해 가는 것과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상담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같거든요. 삭제하는 것은 중앙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거나 하는 것은 밀착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서지영 의원님 안은 ‘반드시 끄야 된다’ 또 이인선 의원님 안은 ‘둘 수 있다’ 이렇게 두 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가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둘 수 있다’ 쪽으로 힘을 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둘 수 있다’는 건 꼭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자자체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제기했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은 이미 각 지역별로 해바라기센터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니까,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삭제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두는 것이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못 둔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니고 봉 뜨니까 자꾸 답답한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나 구체적인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은 ‘둘 수 있다’라고 해서 보통 행정재량을 두잖아요. 예산도 준비해야 될 거고 인력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은 ‘둘 수 있다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 두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해결이 되는데 여가부는 와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이렇게 법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데들은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법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광역단위들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과 여가부의 행정이 결합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여가부의 행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 이 법에다가 못 박아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 여가부는 다른 행정부와 달리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법안을 심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떡하든지 법에다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삼권분립의 원칙상 법은 좀 유연하게 만들어 주면 행정기관들이 행정을 통해서 그걸 실현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행정기관이, 여가부가 뭔가를 행정적으로 실현하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이니까 자꾸 법으로 해결해 보자 이런 법 논의가 너무 빽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법을 만들면 여가부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년 내에는 울산이든 이런 인구가 많은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센터를 다 두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지요.

○**한지아 위원** 지금 현재 ‘시·도지사에 둔다’ 그러면 다시 시도의 의견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 통과가 어려운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재량이 아니라 그러면 의견 받아야 됩니다.

○**한지아 위원** 근데 좀 적극적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 위원** 제가 좀 정리하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지역별로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바라기센터나 등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이나 심리치료 지원은 다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특화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위원** 직접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삭제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필요합니다.

○**김상욱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갖출 수 없으니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해도 문

제가 없나요, 아니면 문제가 있나요?

지금 협업 부서니까 아실 거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전국 것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장단이 어떻게 돼요? 지역에 센터를 두는 것과 중앙에서 일괄해서 하는 게 장단이 어떻게 돼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입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에 각각 둘 필요성은 좀 적습니다. 중앙에 시스템을 두고 촬영물이 있을 경우에 텁으로 그쪽으로 업로드를 해 주면 그쪽에서 삭제지원이 가능하고 지역센터에서는 밀착 상담이라든지 치유·회복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항을 이렇게 마련을 하더라도 지역에서도 삭제지원을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앙 센터의 삭제지원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욱 위원 위원장님, 제 개인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이나 심리상담이나 이런 지원들은 디지털성범죄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또 삭제지원은 전문적인 역량과 장비가 필요하고 중앙에서 하는 것과 지역에서 하는 것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니 좀 재량을 두는 취지로 ‘둘 수 있다’ 규정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왜 이 4개 광역지자체는 별도의 지원센터를 둬 가지고 삭제지원을 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4개 시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장의 의지로 우리 시도에서는 삭제까지 다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시스템 마련이라든지 이게 전반적으로 됐던 거고……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그 의지가 뭔가 자기네 자체 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니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도움도 되고 아마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많다고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삭제지원 시스템부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조례로 그렇게 마련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디지털성범죄 관련된 법무부 TF에서도 이 내용이 지적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지역에 센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자체별로 지역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통일되지 않고 편차가 있다 그리고 관련된 지원센터가 인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단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치 중앙에 있는 것으로 없는 지역도 전체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비판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런 편차를 줄이는 거나 그리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여가부 차원에서도 조금 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백승아 위원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물론 심리상담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신의 영상물이 삭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자기가 자기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일일이 알려 줘야 그걸 삭제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다 찾아서 적극적으로 삭제해 주시나요?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저희가 피해 촬영물을 영상이든 확보만 하면 DNA를 추출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크롤링(crawling) 작업을 통해서 URL까지 다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제지원 요청을 드리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URL을 일일이 확보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 사실 방심위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가부의 디성센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중심이기 때문에 촬영물 하나만 갖고 있어도 다 찾아서 삭제지원까지 해 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나온 영상 하나를 제공하면 그걸 똑같은 걸 다 찾아서 이 주소를 다……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예, 똑같거나 유사한 것까지 다 찾아서 크롤링을 통해서 삭제지원까지 해 드립니다.

○백승아 위원 그걸 지금 중앙에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아까 말한 인천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그걸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예, 인천 경기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디성센터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그 촬영물 가지고 크롤링해서 삭제지원하는 업무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특화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센터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지역에서는 근거리 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중앙센터에서는 초기 상담을 하고 장기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특화상담소로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가까이에서……

○김상욱 위원 지금 삭제하면 예를 들어서 인천이 삭제를 잘해요, 중앙에서 삭제를 잘해요? 제가 피해자다, 삭제 요청을 한다면 중앙으로 하는 게 삭제가 더 잘돼요, 인천으로 하는 게 잘돼요? 그냥 궁금해서…… 어디로 가는 게 삭제가 더 잘돼요? 똑같아요?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삭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영상물의 DNA를 추출해서……

○김상욱 위원 아니, 어디로 가는 게 낫냐고요. 제가 만약에 인천에서 피해를 봤다면 중앙으로 가는 게 나아요, 인천으로 가는 게 나아요?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사실 삭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그걸 크롤링해서 삭제지원하는 것은 서비스에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 다만 중앙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여러 지역센터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수사 지원 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채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채증 지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중앙에 인력이 충분한가요, 지역센터가 없는 곳까지 다 수용 가능할 정도로?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희의 문제의식은 잘 들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한번 센터에다 요구해서 다 찾는 건 아니고 자료라는 게 한 번 삭제되고 나서도 여러 컴퓨터 유저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자동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수시로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크롤링해서 잡히지 않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구글로 별도로 자기네들이 검색해서 오히려 정보를 다시 제공하기도 하고, 방심위보다는 나은 시스템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담센터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정보가 최대한 많이 빨리 삭제될 수 있도록 접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삭제도 해 줄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자체장들이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라도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가부 입장에서 당연히 중앙이 더 좋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분명히 지역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한 수요도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은 안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금 충청권이 없고 호남권이 없으니까 여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랑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광역 지자체하에는 다 세우는 걸 목표로 갖고 5년 계획이든 이렇게 예산 수립도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국감 때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예산편성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역과 중앙에서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에 편차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지역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지아 위원** 예, 지역과 중앙에서 최종 삭제까지 걸리는 시간적인 편차나 평균에 편차가 있는지……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노현서** 사실은 피해영상물을 확보를 해서 DNA를 추출하고 크롤링 작업을 해서 URL을 확보하는 것까지 걸리는 시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삭제 요청을 해서 사업자가 직접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설치·운영 근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둘 수 있다’ 정도가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7조의4 3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김남근 위원** 아무튼 이인선 의원안 보면 다 ‘시·도지사’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행위를 하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장관’ 이렇게 해야 딱 맞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번 여가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법령 정비를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김남근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의 자격기준과 종사자의 보수교육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번 수정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서지영 의원안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종사자의 보수교육, 피해자 등의 의사존중, 운영실적 평가 등의 규정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결국은 서지영 의원안은 그냥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앙하고 지역을 다 명시를 해서 구분을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6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16시21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19항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가 아까 법안심사를 해 보니까 정부 측 의견이 바로 나오니까 좀 이해하는 데 어려워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지난번에 간략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쪽입니다.

이병진·이달희 의원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특별 규정으

로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와 강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현행 1년 이상에서 이병진 의원안은 3년 이상, 이달희 의원안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현행 3년 이상에서 이병진 의원안은 5년 이상, 이달희 의원안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오른쪽 중간 단락입니다.

개정안의 법정형인 3년 이상, 5년 이상 및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를 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비영리)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제공 등,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죄 등이 있습니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대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그 죄질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죄들과 죄질 및 가별성의 정도가 유사한지 여부,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가중치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정형을 상향할 경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 상향 대상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볼까요?

지금 처벌수위를 높이는 게 두 가지 행위입니다. 하나는 1페이지 상단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이 행위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약간 구분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관련해서 여가부 말고 다른 부처의 의견을 들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보통 처벌형이면 아무래도, 주로 법사위 관련 법안들이 다른 경우는 많은데 전반적인 법의 균형 관련해서 부처에서 의견이 있을 것도 같아서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이게 법안소위에 직소된 법안인데 시간이 짧아서 다른 부처의 의견은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참고적으로 법정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이병진 의원안처럼 협박인 경우 3년, 그다음에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 5년 이상,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부처 의견을 수렴할 때는 이견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거기에는 이번에 이달희 의원님이 새로 더 센 법안을 내신 거잖아요.

○**김상욱 위원** 저부터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협박보다는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법이나 기타 다른 법과의 균형을 생각할 때 이것을 이달희 의원님 안처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병진 의원님 안처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타당하지 않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형량에 대한 것보다는 먼저 법정형 상향할 경우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꼭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부모라든지 주변에 다른 성인들을 협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동일하게 죄질이 안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굳이 문구를 사람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걸로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 상태하에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병진 의원안 정도로 상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백승아 위원** 다른 입법례랑 비교하면 이병진 의원안이 적당해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처벌수준이 너무 약하네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것은 법원도 좀 문제가 있지요.

○**백승아 위원** 다른 입법례도 다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되어서 활동하시는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법정형 올리는 건 장점과 단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전에 비해서 법정형이 갑자기 올랐을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들이 유죄를 선고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유죄율이 떨어지는 사례들도 있다, 그래서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그 범죄자를 제대로 처단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는 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양형기준이나 이런 데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들도 있어서 저도 이병진 안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근 위원** 지금 입법 취지 자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것은 협박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만드는 것, 특별 형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단계의 특별 형법을 만드는 거

잖아요, 협박죄에 대해서.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죄가 이미 성폭력방지법에 있고 그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가중하는, 두 단계로 가중하는 걸 만드는 거고 두 번째 것은 강요죄에 대한 특별 형법 규정을 만드는 건데 성착취물을 이용한 강요죄의 경우에는 성폭력방지법에 특별규정이 있고 다시 그 성착취물이 아동·청소년일 경우에 더 가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면 저는 여기 사람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성착취물을 가지고 그 피해 대상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에게 강요를 한 경우에 가중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일 가중 규정을 만들려면 사람이 아니라 그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했을 때 가중하는 것들이 이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병진 안으로 3년, 5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걸 가지고 다른 부모나 이런 분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는 또 다른 걸로 이미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 취지에 맞는다면 사람도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걸로 범위를 축소해야지 입법 취지에 맞고 운영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실까요?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페이지 맨 밑에 참고 조문을 보면 이미 현행법에도 이런 협박·강요죄는 있는 겁니다, 원래 없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이병진 의원님이나 이달희 의원안은 단순히 처벌수위만 높이는 게 아니고 구성요건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처벌수위를 높이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11조의2로 수단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제한하는 특별구성요건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구성요건을 새로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만 해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으로 할 거냐 이것을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김남근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고집하지는 않고 저는 그냥 이병진 의원안처럼 하자는 거였는데 이것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 이런 정도로 하는 것도 의미는 팬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희 위원 해당 아동·청소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동·청소년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결국 정책의 문제니까.

○김남희 위원 정책의 문제인데 저는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데 사실 성착취물 이용해서 반드시 그 해당 아동·청소년이 아닌 다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특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그럴 수 있어서……

○김남근 위원 대부분의 사안은 그게 상당히 청소년에게 판단을 어렵게 하고 그런 강요를 받아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아동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처벌하자는 거잖아요. 해당 청소년이 아닌 다른 아동·청소년을 그걸 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이미 있는 거잖아요, 성폭력방지법에.

그러니까 해당 아동·청소년을 해당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가지고 강요를 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고 그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중처벌하자는 거니까 이렇게 2단의 가중처벌을 할 때는 구성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김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 **김상욱 위원** 저는 지금 김남근 위원님 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유는 법 자체가 청소년보호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입법취지에 맞춰서 청소년이 아닌 자를 피해자로 할 때는 그 해당 법률에서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법체계상의 이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괜찮으시면 김남근 위원님 의견대로 문구를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체계상 ‘해당’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제가 쓰기는 했는데 ‘당해’ ‘해당’ ‘그’로 쓰는 경우도 비슷한 경우에는 있는 것 같고, 지칭은……

○ **김남근 위원** 가능하면 요즘은 일본식 표현을 안 쓰니까 해당이나 당해보다는 ‘그’……

○ **소위원장 김한규** ‘그’로 할까요?

○ **김남근 위원** 예, ‘그 아동·청소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 **소위원장 김한규** 일본 표현이었나요, 해당하고 당해가?

○ **김남근 위원** 해당하고 당해가 일본식 용어여서, 우리는 그렇게 배워서 익숙한데 앞으로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그렇게 하고, 여기야말로 체계·자구 심사권은 법사위 권한이니까 ‘그’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다른 법률 표현들을 좀 확인한 다음에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 **소위원장 김한규**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어쨌든 그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룹으로 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본인의 성착취물이 아니라도 그걸 받거나 같이 했다는 그 아동·청소년도 대상에 같이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한 것으로 넓히시면 어떨까……

○ **김상욱 위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량을 강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형량을 확 강화시키는 건데 그냥 내가 피해자라서 내 게 유출돼서 괴로움, 협박당하는 자와 남의 게 유출됐는데 같이 얹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는 이게 좀 구별을 시켜야 되니까.

○ **소위원장 김한규** 그것은 지금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적은 법정형은 아니어서 전문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김남근 의원안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고 그다음 조항으로 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7페이지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쪽입니다.

김남희·강유정 의원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그루밍 행위자에게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인도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8쪽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 및 인터넷의 특성상 불법영상물 등의 초기 차단·삭제 등이 중요한바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법영상물 삭제 요청, 범죄행위 제지 등 즉각적인 차단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강유정 의원안은 신고를 받거나 위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의 급박성 등을 전제로 하는 응급조치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신고를 받거나 위반 의심 사실만으로 침익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수사의 효율성 및 해당 행위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판단 권한과 삭제·차단요청 권한을 주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축된 심의 절차 및 불법촬영물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4시간 내 긴급심의 후 삭제·차단 조치와 비교하여 더 유의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영상물 삭제 관련하여는 경찰이 방침위의 고유 권한 및 업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그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수사력 집중을 저해하여 검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제지 및 경고 관련은 위장수사 대상 범죄인 성착취 목적 대화가 발생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제지·경고를 할 경우 위장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곧바로 삭제되어 위장수사 실시 가능성이 처음부터 차단될 수 있으며 피해자 인도 관련은 피해자를 보호시설, 상담시설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행위를 조치해야 되는 주체인 경찰청하고 방통위의 의견을 고려해서 김남희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8조의2 1항 중에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삭제·차단 요청’을 ‘삭제·차단 시정요구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방침위에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기관에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 삭제·차단 등 처리절차 안내 의무는 반영하되 처리 결과의 통보 의무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8조의2 2항은 온라인 그루밍 의심 사실 발견 시 위반행위 중단 통보 및 치별 서면경고 의무는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필요 시 동의를 얻어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하는 규정은 원안대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필요성은 전문위원이나 여가부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방통위하고 경찰청이 신중 검토라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일단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 오신 분 없는 거지요? 나중에 법사위에서 반대의견을 얘기할 때 저희가 사전에 협의할 수가 없어서 오늘 내용을 잘 알고 갔으면 좋겠네요.

혹시 김남희 위원님이 먼저 의견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남희 위원 이게 서지현 검사가 참여했던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에서 강력하게 권고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나 하면 방통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은 면들이 있고.

수사를 하다 보면 성착취물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된 상태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실제 수사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착취물이 발견이 돼도, 그러니까 성착취물의 특징이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니까 이것을 내버려 두는 순간 계속 퍼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응급조치를 취하는 권한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권고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금 방심위의 주장은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적어도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것 신중 검토해야 된다고 말할 영역은 좀 아닌 것 같다.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는 법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찰청의 입장은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을 주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성착취물 피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고 강력하게 권고가 되어 있던 안이고 여가부도 수정해서는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래도 이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만 조금 걱정되는, 오히려 제가 좀 더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이게 신고가 전제되는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특징 중의 하나는 아동·청소년들 그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에 접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막 발견하는데 피해자가 알지 못해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퍼져 나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뭔가 보안장치는 없을까라는 게 사실 저의 고민이긴 해서 그런 범위까지 포함하는 조문이 될 수는 없을지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내용은 들으셔서 다 알겠지만 김남희 위원님은 본인 법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법안을 내신 건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씩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법안은 김남희 의원하고 강유정 의원안인데 규정 체계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은 같을 것 같아서 편의상 김남희 의원안을 기준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저는 그냥 여가부 수정안 기준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서 16페이지에 여가부 수정안이 있어서 대조해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6페이지 왼쪽이 김남희 의원안이고 오른쪽이 여가부 수정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차이점은 삭제 요청을 어디다 하느냐입니다. 김남희 의원안은 경찰이 문제되는 영상물을 게시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 여성가족부 안은 그게 아니라 경찰은 그냥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방침위에다가 요청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 뒤에 ‘이 경우’ 단서 부분은 동일한 거지요, 동일한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남근 위원** 일단 취지는 이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포착을 했을 때 그 단계에서 빨리 삭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삭제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많이 유포돼서 나중에 삭제하기도 어려워져요, 많이 퍼져 가지고 피해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신속하게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방위 쪽에서 나오는 법안들 중에는 아예 그 플랫폼 자체가 검색을 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하자, 그러면 유포되는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약간 기술적 조치들을 필요로 하고 또 별도의 입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미 수사기관이 파악했을 때 가장 빨리 삭제시킬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해당 플랫폼에 연락을 해 가지고 삭제하도록 하는 게 가장 빠른 거잖아요. 그런데 방통위에 가서 방통위에서 또 이걸 안전으로 옮겨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삭제할까 말까를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이미 적어도 한 삼사 개월은 걸릴 것 같고 그 사이에 훨씬 더 많이 유포가 되는 거여서 여가부의 수정안은 이 입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삭제를 하자라는 거는.

너무 방심위의 권한 문제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좀 더 빨리 삭제를 하도록 해서 더 유포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피해를 구제하자는 이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원래 김남희 의원안대로 해야지만 입법 취지가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가부에 한 가지 문의드릴 것은 방심위는 이삼 개월 걸리는 건 아니고……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24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실제로 24시간 내에 실무자가 조치를 취하나요, 지금?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24시간 이내에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그런 걸로……

○김남근 위원 24시간은 훈시규정이고 어떻게 방심위 심의위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나요. 24시간 내내 대기하고 있다가 올라오면 바로 심의해서 하고 그려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성착취물 같은 경우는 긴급 삭제해서 24시간 이내에 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한규 성착취물은 그렇게 한다?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또 서면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몰래카메라 이건 성착취물이 아닌 거지요? 그런 것들은 오래 걸리고 n번방 같이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것들만 긴급하게 처리한다는 건가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몰래카메라도 같이 포함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요? 그것을 다 긴급하게 24시간 내에 처리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김남근 위원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심위의 행정 시스템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지금 김남희 의원안이 방심위의 권한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그것보다……

○김남희 위원 수사 중에 발견했을 때……

○소위원장 김한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사 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단 이 사람들이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추가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어떻게 보면 잠정 조치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방심위가 불편해할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경찰이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성착취물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인가요? 경찰청의 신중 검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결국 업무가 많아져서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어쨌든 삭제·차단 요청받은 사업자가 성착취물 차단 이후에 다시 방심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경찰이 요청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그걸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방심위로 가는 절차가 또 생기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한규 그건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만 그런 거지요. 동의를 하면 신속하게, 몰랐던 것들은 경찰이 연락 오면 본인들이 동의하면 삭제할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는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물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경찰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약간 지연될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방심위 업무

를 침해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경찰 입장에서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근 위원** 두 군데 다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당 플랫폼, 그러니까 이 법안에 의하게 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하고 그 운영·관리자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곳에다 요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플랫폼 스스로 판단을 해 가지고 확실한 성착취물이면 방심위를 거쳐 오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삭제할 거고 또 방심위는 방심위 나름대로 심의해 가지고 거기에 또 추가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군데 다 하면 되지.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경찰은 어쨌든 증거 채증이라든지 수사에 집중해서 그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 자기들이 수사에 집중을 못하게 되면 그걸 더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수사 부담에 대한 영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어차피 여가부 안도 결국은 방심위에다가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경찰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한테 알리는 거든 아니면 방심위에 알리는 거든 범죄자를 잡는 것 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게 여가부 안 아닙니까, 수정안이. 그러면 그것도 경찰이 싫어하겠네요.

○**여성가족부권의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현재도 방심위에다가 요청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에 명시해서 그런 것들은 본인들의 일 처리 절차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 여기 안에서 그동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절차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새롭게 넣어서 그런 것까지는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부분을 수정의견 준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국무조정실이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가 법의 근거를 만드는 것들만 죽 해 가지고 머리 맞대고, 정부하고 국회가 맞대 가지고 그런 것들만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단체들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효과적이거나 의미 있는 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나마 초동에서 경찰이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도와주는구나…… 우리 2022년에 스토킹 관련 했을 때 경찰이 잠정조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됐잖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스토킹을 완벽하게 막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가서 막 신고했는데 방심위 결과를 기다리십시오라고, 24시간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나, 당장 내가 연락하면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도 경찰이 요청하면 뭔가 들어주지 않겠냐, 당장 급한데. 피해자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남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정부의 반대 때문에 대응 적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증거 얘기를 하셨는데 증거물은 따로 기록을 해 두고 그다음에 삭제와 임시 차단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조치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나 또 기존에 계속 주장들이 있었던 만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 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 올리면 사실 이 자리에 경찰청 담당자가 와야 얘기가 되는데……

○**소위원장 김한규** 그리고 경찰 출신인 서범수 위원님이라도 계시면 좀……

○**김상욱 위원** 지금 경찰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얘기를 묻는데 경찰 쪽에서 아무도 안 나왔다는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다음에는 여가부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라도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 생각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삭제까지 하는 것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또 효율적인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자기들이 안 하던 일이나 원래 하고 있던 방심위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심위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또 이중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책임 회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안 나와 있으니까 아마 미루어 보건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서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기존의 시스템은 이러이러한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가다듬어서 방심위에서 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경찰 내부 수사지침이나 등을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는다면 경찰의 입장도 일견 더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하겠다, 인력과 예산 낭비를 줄여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중적으로 하는 걸 막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드는데 지금 경찰 쪽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여가부 쪽에서 어쨌든 이 법안 관련된 주무 부처시니까요, 경찰 쪽으로도 협조 요청을 정상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에서 삭제를 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방심위 쪽으로 바로바로 전달돼서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경찰 측 주장은 결국 그거잖아요. 이중으로 하는 건 예산 낭비다 또 절차 낭비다 또 자기들은 해 본 적도 없다, 할 줄도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할 줄 알고 해 온 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방심위 쪽으로 좀 더 효율적인, 유기적인 관계 구축을 독려하는 그런 노력들은 여가부에서 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취지 맞지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김상욱 위원** 그리고 다음에 불러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예, 경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를 일일이 찾아 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김상욱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심위 쪽으로 바로바로 유기적으로 관계가 설정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몸처럼. 그게 지금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불만이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여가부에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없어서……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래서 이번에, 아까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쪽의 그런 보호조치에 맞춰서 각 부처의 역할들을…… 저희가 지난주에도 국무조정실장님 주재하에 차관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라보실 때 고유의 역할에 따라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안을 만

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근데 저는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여성가족부 수정안을 우선 통과시키는 것도……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요?

○**김상욱 위원** 여가부에서 경찰에 얘기 좀 해 주세요. 좀 유기적으로 바로바로 같아…… 식겁했다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현장 분위기 전달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적기에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한규** 김남희 의원님처럼 하면 경찰이 삭제 요청할 경우에 이것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 어떻게 되는지, 응할 의무 이런 조항들도 다 들어오긴 해야 돼요, 사실은. 아니면 그 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는 것들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기는 한데 법을 제안하신 김남희 의원님이 여가부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1항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2항은 지금 여가부 안은 삭제하는 건데, 지금 2항은 문제되는 사람한테 위반행위 중단하라 이렇게 통보하는 건데 이것을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경찰청의 위장수사 이것은 별로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위장수사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한테 범죄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걸 못 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가부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삭제·차단 처리 결과가 방심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아까 논의한 그런 연장선입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온라인 그루밍 수사 같은 경우는 신분 위장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증거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건데 경찰들이 신분을 위장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을 때 이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김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으면 이 조항은 살리되 단서조항 넣으면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그러면 만약에 경찰들이 이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김상욱 위원** 아니,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위장수사나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도 단서조항 넣으면 되잖아요.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근데 여기에 온라인 그루밍 수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범죄에 대해서……

○**김상욱 위원** 의무는 부과하되 다만 수사 목적이나 등등의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으면 위장수사도 할 수 있고 또 즉시 통보도 할 수 있고 둘 다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김남희 위원** ‘다만 위장수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을 수는 있을 것 같고……

○ **김상욱 위원** 통보를 바로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것 같고, 물론 위장수사나 이런 것도 니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 **김남희 위원** 근데 위장수사에 해당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 케이스잖아요.

○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15조의2가 온라인 그루밍의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어쨌든 그 사람을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와 좀 중복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통지를 안 받으면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이 행위를 계속 해도 된다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로 옮겨다니면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경찰 인력들은 그걸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 할 때 통보를 받지 않으면 거기서는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해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단하라는 통보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범죄행위를 하는 곳에서.

○ **한지아 위원** 비약적인 것 같은데요. 통보를 안 한다고 위법이 위법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 설명한 조은희 의원안은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4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다만’ 규정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찰이 선택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는 신분비공개수사까지 해야 될 경우가 있겠고 어떤 경우는 이것만 중단시키면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영업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면 일시적으로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지적하면 위법행위가 중단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이 범죄를 잡아야 되니까 우리가 불법행위를 확인했는데도 당장 얘기하지 못하고 일단 숨죽이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여당 간사님이 얘기하신 안인데 저는 단서로 넣는 것은 충분히 경찰에서도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일단 이 조항에 대해서 경찰청의 의견은……

○ **김상욱 위원** 경찰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왜냐하면 이 주체가 경찰청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경찰은 의견 듣는 거고 이게 여가부 소관 법률인데 저희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 정도는.

○ **김남희 위원** 그 정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고 통과시키는……

○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은 그 정도로 하지요. 저는 경찰이 이 정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경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도망갈 기회를 주게 돼서……

○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판단할 수 있게 한다고요. 신분비공개

수사가 필요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경찰이 판단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줘서 사안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보하고 경고하면 되는 거지요.

제가 취지는 알겠어요. 경찰의 입장이 있어서 그것을 전달하는 건 알겠는데 김 위원님하고 저의 얘기는 경찰도 반대하지 않을 정도의 안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니까 수정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지금 김남희 의원안의 ‘다만’ 규정에다가 뒷부분에 ‘사법경찰관리가 제25조의4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데 이건 긴급인가요? 그러면 제25조의4를 빼고, 어차피 신분비공개수사는 법에 정의가 있으니까 ‘신분비공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단서에 넣지요.

○**김남희 위원** 참고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여기에 행위 제지에 관련된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 대한 조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걸 넣는 것이 법체계상 전혀 문제가 있거나 전례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일단 ‘위장수사’라고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신분위장수사하고 비공개수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위장수사 등’으로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것은 좋습니다. 그 정도는 경찰 설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고.

3항은 지금 여가부 수정안이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동일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동일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현안 그대로……

○**소위원장 김한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견이 모아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7쪽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일한 의견입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첨법에 관해서는 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의결정족수 때문에요. 지금 김남근 위원님도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의결할 순서인데 현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만 휴식을 취하고 10분 후에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처리하고 아니면 다음 법안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안은 아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사일정 제26항~28항, 이 법안이 간략한 것 같으니까 이 법안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 시작할 때 여가부에 부탁드린 것처럼 양육비 대지급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가부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 오시니까 한 분 나가셔 가지고, 원래 약속대로 잠시 10분 정회했다가 5시 18분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8)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6)

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8)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정족수 때문에 다음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3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쪽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도 있겠으나 현금 지급절차 등과 관련한 다수의 규정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입법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에 조손가족도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이 중간에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수석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부연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사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확한 법 주소를 얘기하자면 청소년 지원법을 개정하는 게 체계는 더 적절하지만 지금 현금 지급 절차와 관련한 절차 규정들이 청소년복지법에 이 내용을 규정하면서 또 거기에 다수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보다 이 법에 이 절차를 다 규정하고 있으니 특례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게 약간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왔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지금 조은희 의원안에서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인 경우가 아니라 그냥 모든 청소년부모를 다 지원 대상자로 하는 법안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득요건이 약간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부모……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냥 좋다라고 하면 되는데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딱 하시니까 저희가 그걸 체크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기가 좀 불편해서 지금 그러는 건데요. 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 목적 자체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한부모가족이라는 것은 법의 정의상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부모가 한 분인 경우만 의미하는 거라서 청소년부모인 경우는 한부모가족이 아닌 경우들이 포함될 텐데 이것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포함시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 이 법의 규정이 바뀌지 않더라도 대부분 청소년부모의 양육비 지원하는 것하고 지원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건가요? 2페이지에 따라서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면 지원 금액이나 범위가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관 최성지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전산시스템도 없고 수기로 작업하고 있는데요. 조손가구 특례도 한부모 복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로 청소년부모를 둘 수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지원체계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조손가정 특례가 이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들어 있어서 체계가 이미 약간 법명을 초과하는 범위의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한부모는 아니지만 유사한 조손가구도 5조의2를 보면 특례로 한부모와 유사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도 돌봄의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조손가구와 유사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고민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그때도 조부모 가족이 아니라 조부나 조모 한쪽이 키우는 경우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서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조부 또는 조모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그리고 두 분이 같이 키우는 경우도 여기에 준용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요? 그런데 법 규정은 ‘조부 또는 조모로서’인데?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가정 내에 조부와 조모가 둘 다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실질적으로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희 위원 실질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계셔도 지원은 받는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하여튼 이 법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한 분뿐인,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들도 전부 다 없고 조부모가 키우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그 아동을 지원하는 건데 청소년부모는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따로

있어서, 2페이지 각주 2에 보면 그 별도의 법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법에 굳이 별도로 다시 포함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잘 모르겠는데요.

○김남희 위원 지금 이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때문에 한다는 건데 그러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이 조문을 준용한다라는 걸 넣는 게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그런데 사회보장시스템 근거를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님께서도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이 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그 조문들 죽 열거해 가지고 이 조문들 준용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준용규정을 들 수도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준용규정을 두면 되잖아요. 그게 훨씬 간명할 것 같은데요. 그냥 법안을 다시 올리시면 안 될까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김상욱 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들어가야 돼요.

○김남희 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준용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이리이러한 조문들을 준용한다 이걸 넣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상욱 위원 그게 법체계상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잠깐만요. 조은희 의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어떤 취지로 이 법안을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복지 지원법……

○김남근 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관할이 여가부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김남희 위원 그것도 여가부예요.

○김남근 위원 여가부예요?

○김남희 위원 여가부에서 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이 법안 굳이 통과시키지 않고 별도로 따로 필요하면 그 법안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김남근 위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부모가족법에 제 몇 조 몇 항 몇 호를……

○소위원장 김한규 그걸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기왕이면 저희가 법체계를 갖추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5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 출생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때에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 한부모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

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국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할 때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견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를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중단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래 학업 중단 현황에 관한 조사는 혈행 법에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7페이지 각주 3 이걸 보면……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학교 밖 청소년……

○소위원장 김한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항상 이런 현황 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도 특별한 건 아니네요. 그냥 실태조사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라는 거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9쪽입니다.

조은희·전진숙 의원안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복지급여 신청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0페이지 조은희 의원하고 전진숙 의원안이 세부적으로 보면 ‘이하 같다’ 이 부분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서면’ 한 다음에 팔호 안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음에 ‘이하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게 차이예요. 어떤 걸로 가자는 겁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이하 같다’ 다음 조항에서……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의원안, 그러면 뒷부분에도 실제로 서면이 반복되나 보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조은희 의원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 이들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보다 적합한 직업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가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법 조문이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전진숙 의원님 안 계신 데서 죄송합니다. 소위원인데 안 계시니까 없는 데서 얘기를 하자면, 다른 법안을 만드시면서 같이 넣은 거니까 기왕이면 명확하게 형용사를 넣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3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원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사회적 고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한부모 및 자녀의 건강과 생활상태 등의 점검 및 자녀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개정안의 문구를 수정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다만 청소년 한부모에 국한하지 않고 한부모 대상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해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는 삭제하고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청소년 한부모가 아니라 모든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안이 법안이 따로 없기는 한데 내용은 이해가 됐고,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남근 위원 확대하자는 거니까 정부안대로 하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여가부 안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없으시니까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7쪽입니다.

한병도 의원안은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 중 법률구조서비스에 출생 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유전자검사 비용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미혼모와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와 관련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유전자검사는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법률구조서비스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는 법률구조서비스의 내용에 포함하고 제5호의2를 신설하여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 비용 지원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국 내용은 동의하는데 자구만 5조의2를 새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동의하는데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법수 위원 여가부 의견 들어 봐야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네요.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도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9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 중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 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통과시키는 걸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1쪽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하고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한

주기의 평가 및 환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시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이 입소자 권리보호조치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정 수용하자는 수석전문위원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2항을 신설하자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조은희 의원안대로 그 내용이 1항으로 오고 2항을 신설한다, 그게 결국은 다른 시설로 보낼 때 권리보호조치를 하겠다라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5쪽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자체장의 강제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미가 명확하게 자구를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7쪽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업무 등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업무 수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제31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을 신설하여 업무에 관한 위탁으로 규정하고 조 제목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미 이렇게 비영리법인으로 지자체에서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평가 같은 것을 할 때 사실은 한가원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김남근 위원 여기는 ‘여성가족부장관’ 이렇게 해서 맞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법들은 또 ‘국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조문 체계에 대해서 여기는 여성가족부장관하고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서 아까 법률하고 약간 규정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사한 제26항부터 28항까지 3건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까 통과시키지 못했던 제15항부터 19항까지 5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법안을 되게 많이 통과시켰는데 아까 법안소위 제일 처음에 논의했던 바와 같이 양육비 선지급 논의를 잠깐 다시 하고 시간이 남으면 아이돌봄지원법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 혹시 관련 자료 준비된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시간을 몇 시로 정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소위원장 김한규 6시까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할까요, 지금 20분 남았는데?

○서범수 위원 10분 전에 마칠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10분 전에요? 그건 아니고, 6시 반까지로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위소득 100%라는 소득기준을 두었을 때 채권확보율에 대한 부분을 21% 정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1만 2000가구에 1만 8000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432억 원이 된다고 지난 소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처럼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고 전체가구일 때는 채권확보율을 전제로 2만 4000명 정도에 576억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14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의를 지난 소위 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20%나 150%나 이 부분은 432억 원과 576억 원 사이에 있는 144억 원이라는 재정소요 때문에 크지 않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채권확보율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확보율이 21%라는 추정치에 대해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2배로 돼서 48%가 됐을 때는 범위에 대해 중위소득 100%를 두냐 아니면 그것을 폐지하느냐에 따라서 973억 원과 1311억 원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채권확보율이 더 올라가서 70%까지 됐을 때는 점점 더 불어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 100%일 때는 1410억 원, 전체일 때는 1900억 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얼마가 든다, 이게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양육비이행법이 15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염원해온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정부 이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저희도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일단 정부 설득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세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추계를 좀 하고 다시 협의를 하려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법안소위를 10월 달에 열기는 어려우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상임위도 법안소위는 11월에 열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그것을 위해서 법안소위를 또다시 미룬다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이 자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채권확보율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48.3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도 모르겠고 그것보다 먼저 채권확보율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장 이윤아 안녕하세요? 가족지원과장 이윤아라고 합니다.

일단 선지급 제도의 기본적인 신청요건이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 번에 얘기가 됐었고 이 채권확보율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부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일단은 그 자료를 썼습니다.

한부모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채권확보율이 21.3%고 그리고 미확보율인 78.7% 중에서 법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음이 27% 그리고 주고받지 않기로 일단 협의하고 이혼부터 함, 이게 51.7%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숫자인 21.3%로 저희가 이것을 추정을 해서 했는데 사실 이 숫자는 매우 보수적이고요.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에서 78.7% 양육비 확보가아예 양육비 채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48%로 오르고 70%로 올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장 이윤아 저희가 양육비 추계를 한 기본적인 통계는 21.3%로 정확한 통계로 한 거고……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태조사에 나온 건데 갑자기 그것을 48.3%, 70%를 갖고 오시는 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장 이윤아 48.3%로 한 이유는 만약에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면 사람들이 채권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채권 확보했을 경우……

○김남희 위원 아니, 이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21.3%가 어느 세월에 48.3%가 돼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지금.

○소위원장 김한규 김남희 위원님, 저도 동의하는데 잠깐만요.

용어부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면 결국 채권확보율이라는 건 편의상 양육비를 주는 분이 남성이라고 치면 여성분이 남성한테 양육비를 받아 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인했느냐 그게 채권확보율이라고 보는 거고 통상적으로 합의를 하든 이혼 소송을 하든 양육비 관련해서 별도의, 그러니까 법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을 확보했느냐는 얘기네요.

저는 김남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 게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갑자기 양육비 문화가 확 바뀌어서 지금 21.3%인 게 갑자기 여성분들이 남성한테 이혼한 부분 중에 한 70%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받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여가부차관님,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1명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8명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원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런데 채용이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이미정입니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부서에는 변호사가 현재 6명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소송 지원하는 게 6명이고 그분들이 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급을 하고 나서 구상하는 것 말고 양육비를 못 받는 분을 도와서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는 소송은 또 별도로 도와주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여섯 분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21.3%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와서 그게 갑자기 70%로 는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여섯 분이 결국 구상권 소송도 해야 되는 거지요?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이미정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위해서 그 변호사들 숫자 늘리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내년에 선지급제 관련해서 행정인력 8명을 증원한 상태고요.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소송은 변호사가 해야 돼요. 구상권 소송 변호사가 하잖아요.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이미정 선지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시적 양육비를 현재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서 강제징수를 하고 있고 시스템에 의해서 예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사소송이 아니라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서 그냥 바로 징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한부모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에서 당시 이행관리원의 채권확보율에 관한 의견은 2009년에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돼 있는 이후에는 저희 원에 신청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현재 채권 확보를 한 상태로 들어오고 양육비 이행확보나 이런 부분이 추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는 기재부랑 협의할 때 채권확보율 몇 퍼센트를 전제로 합의하신 거예요? 70%를 기준으로 해서 14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재부랑 협의하신 거예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아닙니다. 이건 중장기에 저희 최대치를……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기재부하고는 얘기 안 한 것을 저희한테 들이밀면서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중위소득 100%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저희가 예산 협의를 할 때 한부모 실태조사를 활용했는데 기재부는 이게 추계가 조금 정확하지 않다, 여가부의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왜 없어요, 중위소득 100%하고 전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지금 중위소득 150%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준처럼 하는 것도 저는 일견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전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러프하게라도 소요되는 예산 수치를 정리해 달라고 한 거지, 중장기적으로 채권확보율이 70% 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요구한 거는 준비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저희가 추정치 통계를 드렸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하려면 또 가공을 하고 추정치를 만들어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현재 이 21.3% 내에서는 이게 레인지가 넓지 않기 때문에 큰……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지요.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소위원장 김한규** 채권확보율이 이렇게 대규모로, 그러니까 48.3하고 70%까지 늘어나는 거는 대략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정도 중장기적인 예측이세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양육비이행원장님 말씀드렸던 협의이혼 시에 양육비부담조서 쓰는 게……

○**소위원장 김한규** 잠깐만요. 여기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님 와 계세요? 안 보이는데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죄송합니다. 본부장이 얘기하신 협의이혼 시에 부담조서 쓰는 게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를 저희도 좀 봐야 되고 사실 70%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그 경과를 봐야지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은 그렇게 되면 좋은 미래잖아요. 되도록이면 이혼할 때 양육비 협의를 다 하고 통상적으로 애를 키우는 부모가 실제로 3분의 1 정도 내고 그렇지 않은 부모가 3분의 2 정도 내잖아요. 그게 관행인데 그런 약속이 다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채권확보율 48.3 되려면 저는 한 10년 내에도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수치를 갖고 온 게, 지금 위원들 8명 중에 단 한 분이 중위소득 100%를 얘기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닌데 그 한 분의 법안을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내고 다른 안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검토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우리가 지금 정부안을 냈는데 한 치도 양보하지 못하겠다,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고 나서 기재부 설득하라고 했는데 그것 설득 어떻게 하셨는지, 기재부 설득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협의 하셔야지 그런 협의를 하나도 안 하고 나서 2주 주면 2주 후에 달라져요?

○김남희 위원 그리고 채권확보율이라는 게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급 안 하고?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안 냈을 때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 채권확보율 21.3% 중에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하는 게 몇 퍼센트인대요?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장 이윤아 지금 25% 정도……

○김남희 위원 그러니까 21.3% 곱하기 25%를 한 통계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장 이윤아 예, 예상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은 사실은 논리의 문제라기보다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는 저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사실 저희 야당 위원들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한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기재부가 반대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게 있어서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정부 여당이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위소득 150 내지 200, 협상하고 싶지는 않고 아이돌봄 지원법에 150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절반 기준도 되지 않고 몇십억 수준으로 느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권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이런 논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례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 중위소득 150% 정도로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저희 당 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 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면 여당 위원님께서 좀 받아들여 주시고 기재부 설득을 힘 있는 여당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재정 추계……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합니다. 여당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여가부차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지금 이행관리원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되는 본부장이 왔으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재정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었지만 업무를, 이 처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느냐의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업무가 그렇게 늘어났을 때 잘할 수 있는지……

○서범수 위원 지금 김한규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보편 복지가 어떻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채권확보율 이것 증가해서 이상한 통계 갖고 오시지 말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만 좀 나중에 갖다 주세요.

중위소득 100% 하는 경우하고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200%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중위소득 100%면 75% 정도 차지한다면서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70……

○서범수 위원 만약에 중위소득 150%면 몇 % 정도 차지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 200%면 전체가 커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90%든지 커버한다, 예산이 얼마든다,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대안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 이 이야기거든요.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후차적인 문제고 지금 이야기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와서 우리한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려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대안 검토에 대한 시간을 주시면……

○서범수 위원 예, 시간 드릴게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연휴가 끼고 지난 소위 때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실질적으로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주신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대안으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시간 드리는 거는 아직 논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안이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나중에……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좀 반영을 하면 김미애 의원안에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넣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없나요?

○소위원장 김한규 법안소위 열릴 가능성이 없지요, 다음 달까지는.

○서범수 위원 그러면 자투리라도 좀 해 가지고 법안소위를 잠시……

○소위원장 김한규 여가위 법안소위를 이렇게 연 역사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결정을 하시지요.

여당 위원님들, 지금 아시겠지만 돈을 더 들이는 거는 제 생각에는 10억을 들여도 기재부가 동의 안 해 줍니다.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것 1년 이후에 통과시키면 시행일자가, 만약에 본회의가 11월 달에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2025년에는 예산 거의 안 들 수도 있어요.

○서범수 위원 150%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김남희 위원** 150은 지금 432억과 576 사이지요.

○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이렇게 딱 라이너(liner)가 되는 건 아니니까.

○ **김남근 위원** 늘어나는 예산은 결국은 구상권 행사하는 그 변호사들 숫자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숫자 늘어나는 예산일 것 같은데 이것 구상권 행사하면 다 회수가 될 것 같은데요.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진국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구상권 비율이 30%대, 20%대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일부 나라가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 **김남근 위원** 아니, 소득이 높아질수록 구상권을 행사해서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소득기준이 없는 나라도 있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없는 나라도 구상권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남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늘어나는 기준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운전면허 정지하거나 체납·압류 그런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구상률이 높겠지요.

○ **소위원장 김한규** 참고로 지금도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100%가 아니잖아요. 75%인가요?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그리고 회수율이 15.8%……

○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가부가 지금 현재 75%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시적 규정이니까, 사실 여당도 원하고 야당도 원하는 제도라서 선지급·대지급 이 제도를 확대하자는 건데 지금 100%까지 하자면 저는 유권자들이 속았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되도록이면 확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적용받으면 좋겠는데 일부의 반대가 있다는 걸 아니까, 저는 그래도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갖고 가자라고 해서 150% 이거는 충분히 기재부도 설득할 수 있고 만약에 기재부가 내년 예산 관련해서 설득이 안 된다 그러면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부터로 하겠습니다, 경과규정을. 그 정도로 하시지요.

○ **김남희 위원** 저희 통과시키면 안 될까요?

○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이것까지 안 하면 저는 앞으로 여가부랑 법안 통과시키는 게…… 일체의 양보도 안 하고 그냥 여가부가 원안, 처음 초안 그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어느 상임위에서 이렇게 합니까, 법안소위에서. 장관님이 없어서 다른 부처 설득하기 어려워서 그러는 현실적인 부분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통과시키면 그걸 힘으로 다른 부처를 설득하면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는 건데.

지금 시행일자가 통과 후 1년 후로 되는 법안이 더 많지 않나요, 시행 시기가? 확정일자로 7월인 것도 있지만 그것은 법안 상정 시기가 1년 후고 지금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시키고 나서 1년 후면 내년 12월이나 11월 달이라 예산이 이것의 6분의 1밖에 안 들어요.

○ **서범수 위원** 차관님, 단도직입적으로 중위소득 150%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시간 주시면 관계부처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왜 관계부처하고 이야기를 해요?

○김남희 위원 저희는 통과시키고 그다음 절차를 밟으시라고 하는 게……

○소위원장 김한규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까지……

○서범수 위원 잠시만.

차관님, 뭐가 문제인데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정에 대한 추계를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서범수 위원 그러면 기재부하고 하세요. 자꾸 기재부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장관이십니다. 장관 대행으로 오셔서 내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 주셔야 되지 자꾸 왜 기재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가부가 기재부 소속입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재정이 동반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그것도 지금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150%면 얼마 정도 더 들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채권확보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중위소득 150%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00억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정도는 통과시켜야지 이것마저도, 법안소위에서 이 정도를 못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하러 국회의원 하겠습니까, 법안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 역할인데.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특히 시행 시기가 내년에 한두 달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전체 예산 자체가 내년에 한 40억도 안 늘 것 같은데요, 40억, 50억.

지금 내년도 여가부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6개월에 160억 잡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6개월에 160억이지요? 그것은 내년 7월 1일 날 시행한다는 전제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하반기에 시행할 목표로……

○소위원장 김한규 근데 7월 1일 날 시행을 못 하지요. 지금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준비가 잘 안 돼 있을 거고 통상적으로 한 1년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남희 위원 통과시키시지요.

○김상욱 위원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더 드릴까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원 포인트로 합시다. 원 포인트로 법안소위 잠시 해 가지고……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도 차관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 조금……

○소위원장 김한규 차관이 지금 설득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다른 데는 장관인데 어떻게 차관이 합니까? 차관님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상 당연히……

기재부가 어떻게 예산 늘리는 것을 승인을 합니까? 지금 내년에 보면 6개월 치 잡혀

있다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과시키면 지금부터 1년 해도 6개월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서범수 위원님 가지요.

○**서범수 위원** 그래도 차관님이 여기 와 있는데 조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남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또 가서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실 것 같아.
근데 디테일한 준비를 너무 안 하셔 가지고……

○**서범수 위원** 그래서 한 일주일만 딱 해 가지고 원 포인트로 잠시 할 수 있도록……

○**김남희 위원** 그런데 다 모일 수가 있을까요?

○**서범수 위원** 이렇게 모이면 되지 뭐.

○**소위원장 김한규** 지금 다음주 월요일 날 여가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고……

○**김남근 위원**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할 수도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다 통과시키려고 한 건데 그러면 전체회의를 또 잡아야 돼요, 아시겠지만.

○**서범수 위원** 그러면 전체회의 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주 월요일인데……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일주일 정도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내일 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어차피 이거 지금 추계 나오는 게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김남근 위원** 내일 가서 얘기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나오면 전체회의에서 안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도저히 중위소득 150%로 하면 집행이 안 된다 그런 설득력 있는 얘기가 있으면 또 그때 안 통과시키면 되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아시겠지만 여가위는 전체회의 일정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경험을 하셨겠지만 위원님들이 상임위들이 다 다르셔 가지고.

○**김남희 위원** 통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범수 위원** 30분 전에 합시다, 월요일 날 전체회의 30분 전에 법안소위.

○**김남근 위원** 일단 오늘 통과시키고……

○**서범수 위원** 그때 통과시키자고. 차관님 여기 와 계시는데……

○**김남근 위원** 지금 통과시키고 내일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저히 150%로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다음에 전체회의에서 안 하면 되잖아요.

○**서범수 위원** 전체회의 30분 전에 원 포인트로 합시다.

○**소위원장 김한규** 2주는 못 주겠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시지요. 월요일 날 전체회의 하기 30분 전에 이것만 통과시키고 그때 만약에 여가부가 없으면……

○**서범수 위원** 그때도 좀 그러면 우리도 뭐……

○**김남근 위원** 아니, 30분 전에 하는데 일단 가안으로 150%로 해 놓고 그때까지 도저히 150%가 안 된다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고 오시면……

○**서범수 위원** 그때 다시 이야기하더라도……

○**김남근 위원**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150%로 하는 걸로……

○**김남희 위원** 기본적으로는 150%로……

○**서범수 위원** 아니, 두드리지는 말고 전체회의……

○**소위원장 김한규** 그날 없으면 저희가 단독 처리하는 건 단독 처리하겠습니다. 2주 후는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면 11월 달로 넘어가요. 도저히 안 되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월요일 날 시간이 짧아서 소득요건 포함될 경우 체계·자구 정비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법안 논의할 때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불필요한 걸로 논의를 했었거든요.

말씀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에 소득요건이 포함될 경우 체계·자구 정비사항입니다.

1번,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의 자료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선지급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2번, 여성가족부장관이 선지급 신청인 및 대상자의 금융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여성가족부장관이 선지급 신청인 및 대상자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 및 선지급 신청인의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지난번에 다 한번 검토를 했던 건데 여가부 의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일단 지금은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도 특별히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의견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오늘 다음 법안까지 논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계속 이것 때문에 논의를 못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관심 있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들을 오늘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으니 나름의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건 처리를 1년에 한 3000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면 한 서너 배 늘어난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가 급여 수준이 일단 법률구조공단 이런 데의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가 법안 통과시켜 놓고 실제로 정작 중요한 예산은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실제로 이 법안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는 게 필요한데 내년 7월부터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안 자체는 지난번처럼 한 1년 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전에 국감 과정이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테니까 법안 통과는 먼저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미흡하면 시행 전까지라도 저희가 법안을 개정해서 다시 시행일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서 국회 여가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한데 전문위원님 한 가지, 제 기억이 지금 불분명한데 지난번에 시행일자를 저희가 어떻게 합의를 했었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했던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것은 그때 합의가 됐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어떻게든 이 법안 처리를 할 테니까 그전까지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관련 부처 협의를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문안 작성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한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가부차관님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남근 김남희 김상욱 김한규 백승아 서범수 한지아

○첨가 위원(1인)

전진숙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가족정책관 최성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이미정